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2026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(입소형)



# 목 차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01.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·신고
02.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
03.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
04.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
05.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
06.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
07.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안내
08.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활용 안내
09.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
10. 유니트케어 2차 시범사업
11.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
12.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

# 목 차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13.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
14.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확대
15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
16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
17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·통보·관리
18.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모의전산 운영
19.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
20. 청구상담전문가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
21. 급여비용 산정 기준 관련 상시 학습 콘텐츠 확대
22.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
23. 2026년 신규기관 운영컨설팅

# 목 차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**참고자료 1.** 노인학대 정의 및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

**참고자료 2.** 노인복지시설 입소자(무연고자) 금품관리 안내

**참고자료 3.** 옴 예방 및 관리 관련 안내

**참고자료 4.** 장기요양기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안내

01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 · 신고



## 1.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·신고 ... 기관관리부 3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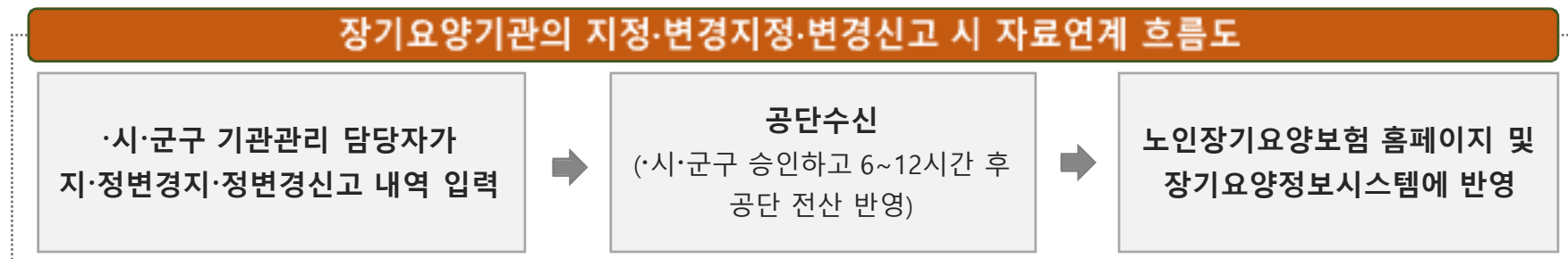
### ◆ 목적

-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의 내용, 시설·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반영을 통해 기관 지원 등 안정적인 장기요양제도 운영 기반 조성

### ◆ 관련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(장기요양기관의 시설·인력에 관한 변경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5조(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)

### ◆ 자료 연계 흐름도





# 1. 장기요양기관 변경 지정 · 신고 ... 기관관리부 3팀

## ◆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

구분	변경 지정	변경 신고	기타사항 등
변경 사항	· 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·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	· 기관의 명칭·소재지 · 기관의 법인 대표자 · 기관의 입소(이용)정원	· 대표자 연락처 · 기관 팩스번호 · 기관 전화번호 등
접수처	신고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·군·구		
구비 서류	·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·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· 인력(시설) 변경 현황, 면허증, 자격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	·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·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·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(정원 변경 시),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(법인 대표자 변경 시)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	·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(지자체 별 구비서류 상이)

## ◆ 기타사항

-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지정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,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·군·구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
- 재난(응급)상황 대응 및 기관 지원 등 지자체 및 공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**기관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변경 요청**



0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**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**



## 2.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...기관관리부 3팀

---

### ◆ 추진배경

-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최초 지정 이후 **매 6년마다** 갱신 심사를 받도록 제도 도입('19.12월)  
※'25.12.부터 최초 시행

### ◆ 관련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2조의3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2조의4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)



## 2.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...기관관리부 3팀

### ◆ 지정갱신 개요

- 유효기간(6년)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**장기요양기관\*의 장**은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
  - \*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시설급여,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
- (신청접수 기간) **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**
- (접수처)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**시·군·구**
- (제출서류)
  - 장기요양기관 지정(갱신) 신청서 1부
  -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1부
  -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1부



0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**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**



### 3.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...기관관리부 3팀

#### ◆ 추진목적

- 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「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」에 따라 지역별 협회(대한의사협회·대한한 의사협회·대한치과의협회) 지역 의사회 추천을 받은 계약의사를 지정(배치)하거나,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입소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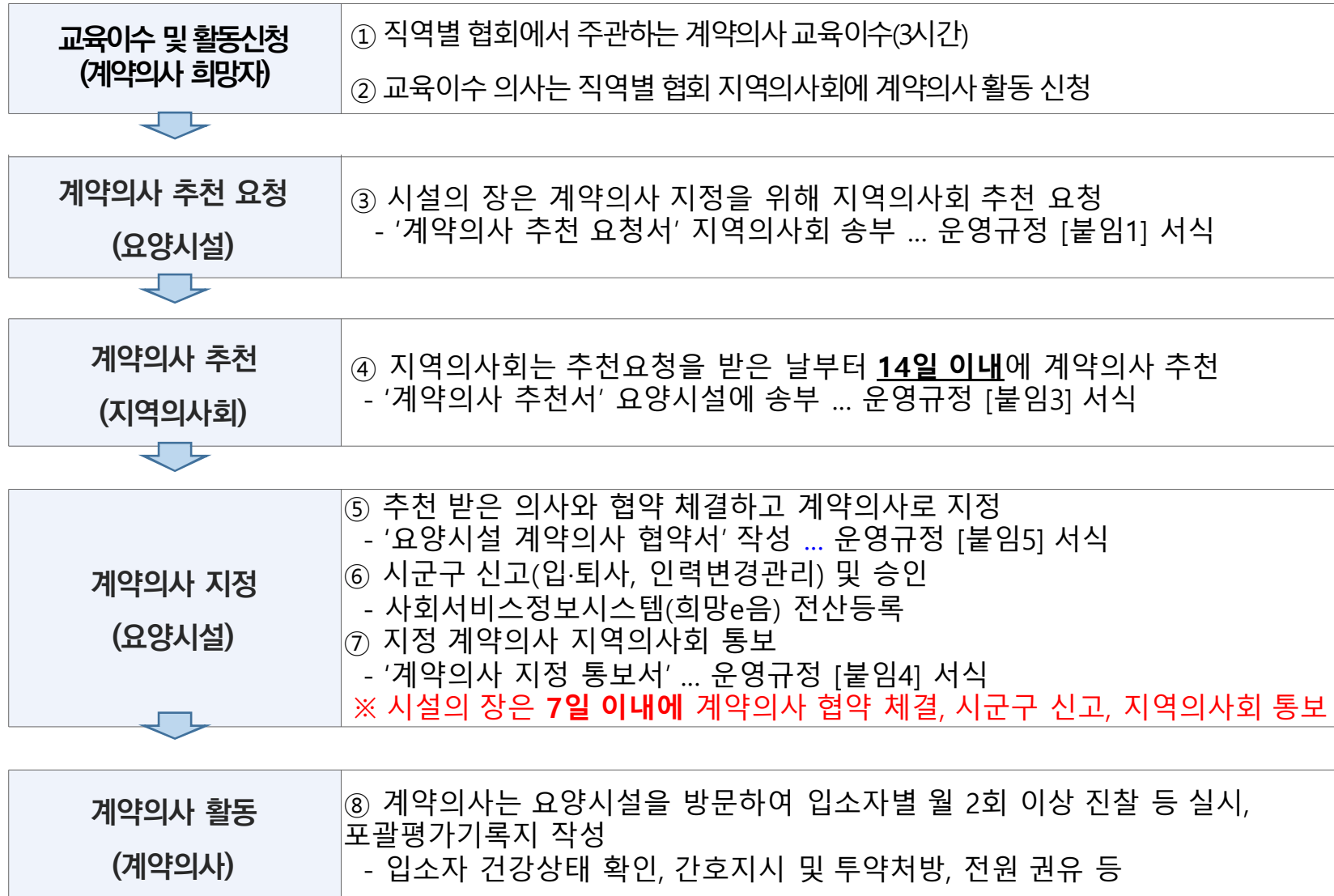
#### ◆ 관련근거
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2조 제1항, 제2항 (별표4, 별표5)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3조(시설급여 제공기준), 제44조의 2(계약의사 활동비용), 제44조의 3(계약의사 활동비용 산정방법)



### 3.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...기관관리부 3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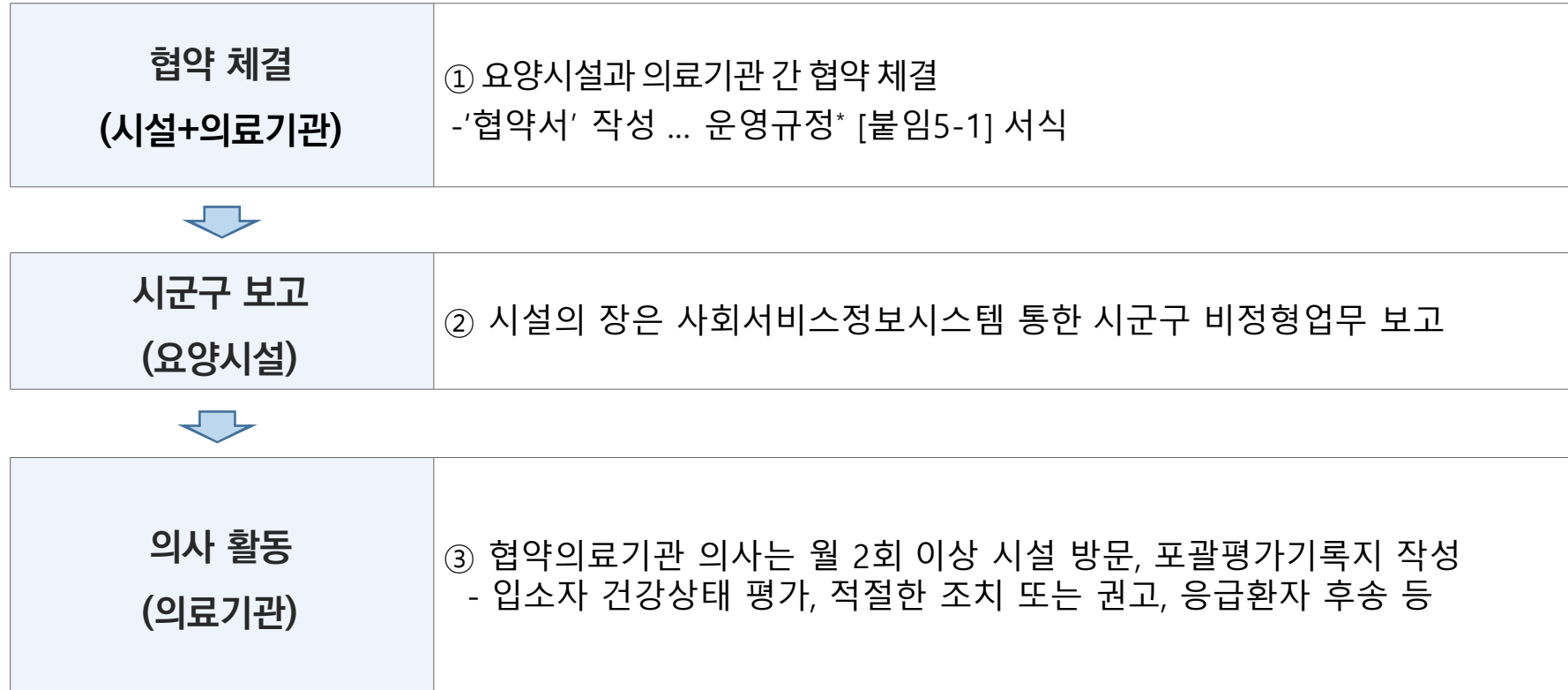
#### ◆ 계약의사 지정 절차





### 3.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...기관관리부 3팀

#### ◆ 의료기관 협약 및 신고 절차





### 3.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…기관관리부 3팀

-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지정 유의사항
  - (계약의사 임기) 계약의사 임기는 1년,  
임기 만료 전 재지정(퇴사처리 후 동일한 절차로 지정)을 받아야 함
  - (계약의사 직종 등록) 시군구 입 퇴사, 인력 변경 신고 시  
→ 직위 및 직종은 반드시 “계약의사”로 등록
  - (협약의료기관 등록) 비정형업무보고 후 시군구에 협약내용(의료기관명, 협약기간 등) 등록 요청  
※ 행복e음 『장기요양기관 대장관리』 화면
  
-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지정 확인 방법
  - (계약의사) 직종 및 입·퇴사 일자  
※ 경로: 요양자원 → 장기요양기관 관리 → 장기요양기관현황 조회 → 인력현황 탭
  - (계약의사) 지정·계약시작·교육이수·추천일자  
※ 경로: 요양자원 → 장기요양기관 관리 → 장기요양기관현황 조회 → 계약의사 현황 탭
  - (협약의료기관) 의료기관 기호 및 협약개시·종료일자  
※ 경로: 요양자원 → 장기요양기관 관리 → 장기요양기관현황 조회 → 협약기관 현황 탭



### 3.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...기관관리부 3팀

---

#### ◆ 참고사항

- '26년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
  - 세부지침 및 절차, 전산등록화면, 관련서식, 다빈도Q&A 등 확인
  - ※ 경로: 노인장기요양보험([www.longtermcare.or.kr](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) → 알림 자료실 → 자료실 → 전문자료실



0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



## 4.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… 기관관리부 4팀

---

### ◆ 추진목적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적정 정보 게시를 통한 수급자 알 권리 강화 및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 보장

### ◆ 관련근거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(과태료) 제1항제2의2호: 500만원 이하  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[별표3]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



## 4.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주요내용

#### ●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 화면 안내

- 홈페이지 공인인증 로그인 ➡ 장기요양정보시스템(기관포털) ➡ 요양자원 ➡ 장기요양기관 관리 ➡ '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' 화면 내 각 탭별\* 해당사항 입력

\* (기본정보/정원·현원/비급여항목/프로그램운영/기타준수사항/CCTV 설치현황/사진/공지사항/게시판)탭으로 분류



#### ● 급여종류별 게시항목

급여종류	게시항목
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(8종)	① 기본정보 (홈페이지 주소, 교통편, 주차시설) ② 보험가입여부(손해배상 책임보험*, 전문인배상 책임보험)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④ 정원·현원 정보 ⑤ 비급여 항목별 비용 ⑥ 프로그램 운영 정보 ⑦ 사진 ⑧ CCTV 설치 현황**
주야간·단기보호기관 (7종)	①~⑦ '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'과 동일 (⑧제외)

\* 손해배상책임보험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제1항 관련,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'1' 또는 '2'로 시작하는 기관만 정보게시 대상

\*\*시설급여 기관 CCTV 설치 의무화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 등 관련법령 및 「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」



## 4.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…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정보게시 주기

- 홈페이지 회원가입 '즉시' 기관정보 게시
- 게시내용 중 변경사항 발생 '즉시'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- **게시 내용이 없을 경우 공란이 아닌 '없음' 으로 필수입력**
- **정원·현원의 경우 3개월 이상,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6개월 이상 업데이트 없을 경우 게시율 감소**  
→ 주기적 업데이트 반드시 필요하며, **실제 현황변경이 없더라도 업데이트 미실시 시 게시율이 감소하므로 주기별 확인 및 등록 필요**

※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에서 [등록]버튼 클릭해야 등록일 업데이트 됨

- **정원이 '0'일 경우, 현원에도 '0' 입력 후 저장**

### ◆ 정보게시 매뉴얼

- 정보게시 관련 전산 매뉴얼 확인 경로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
- 알림·자료실 > 알림방 > 공지사항 > 제목 '화면 정보게시 매뉴얼' 검색



05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



## 5.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「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」

- (대상) 장기요양기관, 노인복지시설, 요양병원, 종합병원에 소속된 신고 의무자
- (방법) 직장(자체)·방문·온라인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

### ◆ 「인권교육」

- (대상)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 전체  
※ 장기요양기관(시설, 재가) 대표자 및 종사자 전체 교육 대상
- (방법) 대면 또는 비대면(인터넷 교육 등)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
- (제공기관)
  - 노인보호전문기관: <https://noinedu.or.kr/> 또는 02)3667-1389
  - 한국보건복지인재원: <https://in.kohi.or.kr/> 또는 1600-8810



## 5.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절차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노인학대 신고의무 ...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6



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

#### 신고의 의무

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
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

####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

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

#### 교육의 의무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### ◆ 노인학대 신고 전화: 노인보호전문기관 (1577-1389), 수사기관(112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
### ◆ 노인학대 신고 앱: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기본, 위치기반 도입으로 신고 시 신고된 지역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

#### 나비새김(노인지킴이) 앱 소개

신고자의 신분을 보장 (최소한의 정보: 핸드폰 번호)  
위치기반의 도입으로 신고 시 신고된 지역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

나비새김(노인지킴이)  
다운로드 아이콘



나비새김(노인지킴이)  
앱스토어 다운로드



나비새김(노인지킴이)  
구글플레이 다운로드



06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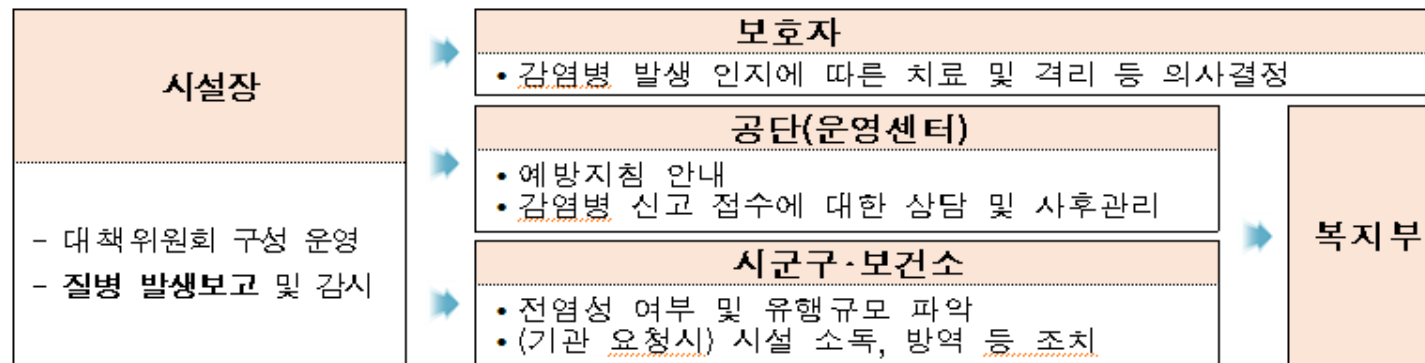


## 6.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대상

- 시설급여기관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관리 ... 치매전담형 포함

### ◆ 감염병 발생 시 보고체계 ... 시설장은 감염병 발생 즉시 통보 및 사후관리



### ◆ 보고방법

- (기관)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등록(발생 즉시), '감염병 발생내역 신고' 화면
  - 신규발생자 등록 및 **치료경과 변동사항(치료중 → 완치, 퇴소 등) 발생 시 즉시 변경 등록**
- (공단) 기관에서 등록 > 지사 담당자 사후관리상담(방문, 유선 등) 실시
  - 사후관리상담: 발생 최초 신고일 기준 7일 이내
  - 추가상담: 사후상담 후, 반기별 치료 경과상 '치료중'인 전건 추가상담 실시
  - 감염병 대상자 '완치' 또는 '치료 종료시' 까지 관리 후 종결



07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안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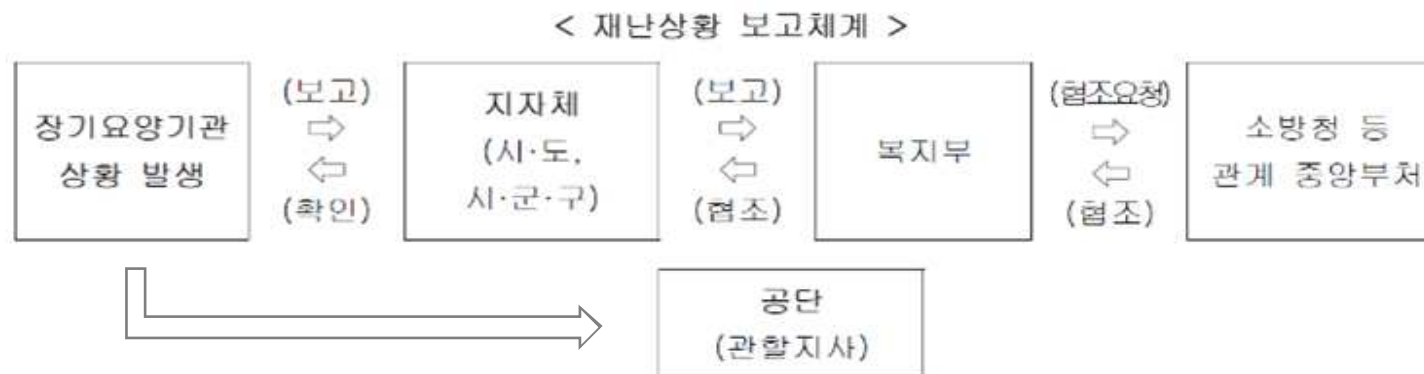
## 7.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안내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대응원칙

- 재난상황발생 시 수급자의 안전한 대피 및 구조를 최우선 수행
- 이동서비스 지원, 기저질환 등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지원, 돌봄 공백 방지 대책 수립

### ◆ 주요내용

-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상황 보고
-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 사전에 연락처 확보하여 비상 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
- 대피시설 및 전원기관 확보, 대피방법 적정성 검토



08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**일상생활기능훈련  
동영상 매뉴얼 활용 안내**



## 8.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활용 안내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추진목적

- 수급자의 기능상태 악화 방지, 잔존기능 유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(입소시설)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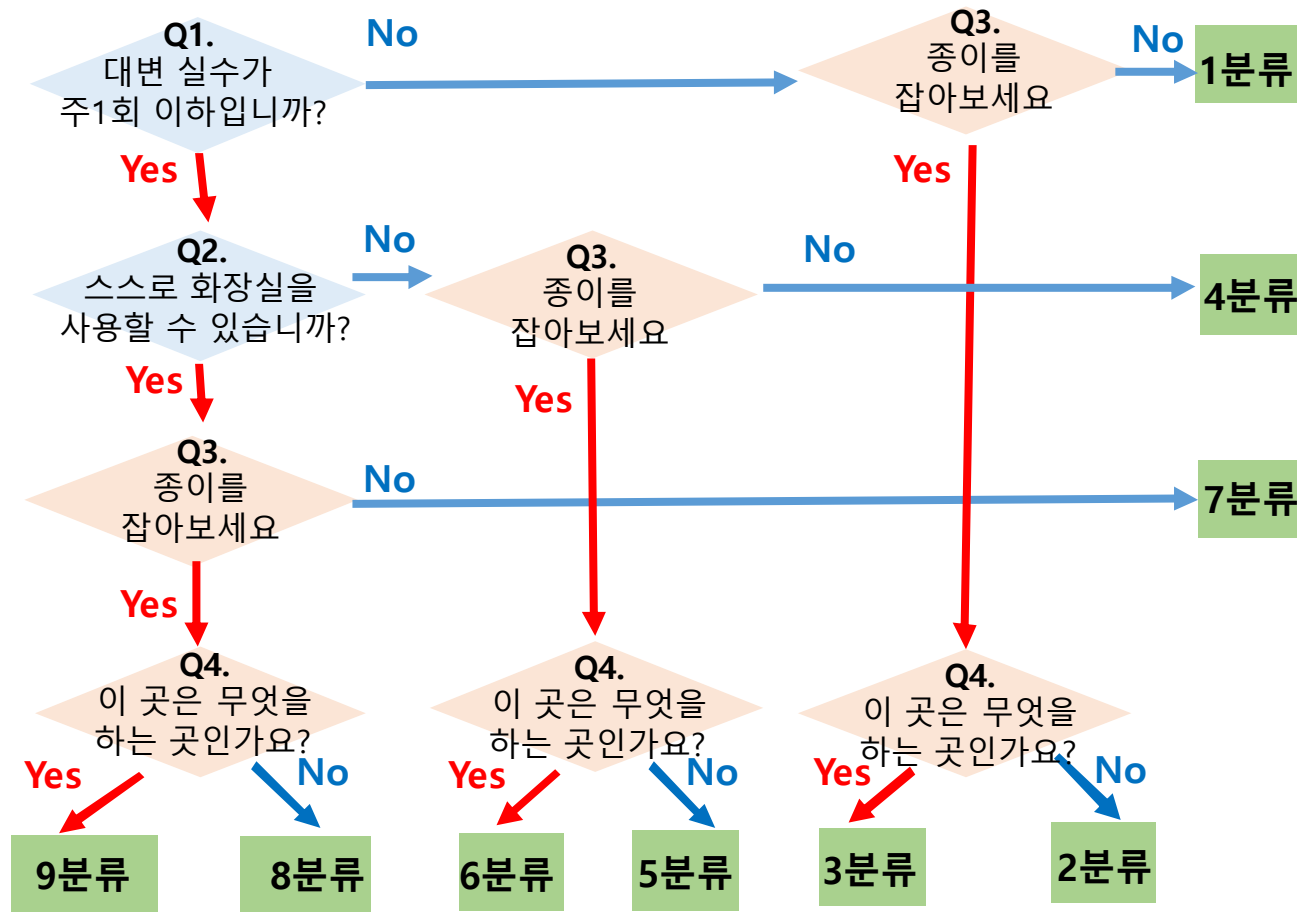
### ◆ 주요내용

-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·인지상태에 따라 보다 쉽게 기능상태를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함
  - 장기요양 수급자와 사전 면담(4개 질문)을 통해 수급자별로 기능상태를 9단계로 분류 가능
- 기능분류에 따라 수급자별로 기능상태에 맞는 일상생활기능훈련 제공기준 및 방법 제시
  - 수급자별 욕구사정부터 계획 수립·수행, 모니터링 등 절차 및 적용방안 등을 기능상태별로 강의차시를 구분하여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공
  - 수급자별로 필요한 도움수준 파악, 훈련 프로그램 작성(예시), 유의사항 설명 등 포함하고 있음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알림·자료실/알림방/공지사항 게시
  - 제목 '2023년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게시 안내'
- '25년 장기요양기관(노인요양시설) 평가지표(기능회복훈련) 활용 자료



## 8.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 매뉴얼 활용 안내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기능분류 및 난이도 구분(분류체계)



분류	신체	인지	일상생활
9	상	상	상
8	상	중	상
7	상	하	상
6	중	상	중
5	중	중	중
4	중	하	중
3	하	상	하
2	하	중	하
1	하	하	하

※ 기능분류(9개)별로 제공지침 및 활동을 동영상 교재(차시별 구분)로 제공함



09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**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**



## 9.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... 기관관리부 2팀

### ◆ 이용 대상자

#### ● 2~5등급, 인지지원등급 수급자

-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기재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확인자
  - > 2등급자 중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(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등, 시행령 제6조제1호)는 이용제한
  - > 인지지원등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및 일반실 주야간보호 이용 가능

#### ● 이용 대상자 확인 방법
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맨 뒷장) [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]의 치매전담형에 체크☑ 된 자

#### 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】

인지활동형 프로그램	치매가족휴가제(단기보호)	치매가족휴가제(24시간 방문요양)
√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(주야간보호)	√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(시설)	

### ◆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침(매뉴얼) 게시

#### ●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알림 · 자료실 > 알림방 > 공지사항



1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**유니트케어 2차 시범사업**



## 10. 유니트케어 2차 시범사업 ... 기관관리부 2팀

---

### ◆ 추진목적

-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유니트케어 운영으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강화 및 돌봄 품질

### ◆ 사업개요

- (사업기간) '25.7.1.~'26.6.30.(12개월)
- (사업대상) 총 17개소, 25개 유니트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... 2차 시범사업 선정 기관
- (사업내용) 자율성·사생활이 보장되는 1인실 원칙·공용 공간 배치 등 소규모 인원(정원 9인)을 하나의 유니트로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



## 10. 유닛케어 2차 시범사업 ... 기관관리부 2팀

### ◆ 시설기준

- 정원 9인, 유닛 단위로 운영
- 1인실 원칙, 침실·공용 공간(중정형 배치) 면적 확대, 화장실·욕실(유닛 당 1개 이상) 의무설치
- 동일층에 복수 유닛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유닛은 정원 8인으로 운영 허용

#### 〈일반 시설과 유닛형 시설 비교〉

구분	기존 시설	유닛형 시설
침실	다인실 설치 가능 1인당 최소 6.6㎡ 이상	1인실 원칙·2인실 예외적 허용 1인실 최소 10.65㎡ 이상
공동거실	1인당 면적 기준 없음 복도식 배치 가능	1인당 최소 2㎡이상 중정형 배치 권장
화장실·욕실	시설 당 의무 설치 (공생의 경우 화장실·욕실 겸용 가능)	유닛 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



## 10. 유니트케어 2차 시범사업 ... 기관관리부 2팀

### ◆ 인력기준

- **유니트 근무 영양보호사는 전임 근무**로, 기관 내 근무(일반실 등) 영양보호사와 별개로 배치기준 적용  
※ 영양보호사 외 직종의 경우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, 5의 인력배치 기준에 따름
  - 유니트는 **일반실 영양보호사와 혼용 불가**, 예외적으로 야간의 경우에만 일부 공동 활용 가능
  - 유니트 내 근무하는 영양보호사는 **치매전문교육 이수 의무 및 리더급 영양보호사\* 배치 의무화**
- \* 리더급 영양보호사는 시범 참여 시작부터 종료까지 유니트 당 1명씩 의무 배치(시설만 해당)

〈유니트케어 영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〉

구분	노인요양시설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2026년도	2.1:1 (3년 이상 리더급 영양보호사 배치)	2.5:1



## 10. 유니트케어 2차 시범사업 ... 기관관리부 2팀

### ◆ 비용산정

유니트케어 등급별 1일당 수가 + 인센티브(월 135만원) + 프로그램 지원비(월 40만원) 지원

※ 기존 시설 대비 인력·기능 보강 비용, 시설 면적 증가, 정원 축소 등을 반영하여 산출

- (유니트케어 수가) 유니트케어와 일반실 입소비용 수가 차액 지원

〈장기요양 등급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수가〉

(’26.1.1.~’26.6.30., 단위: 원)

등급	노인요양시설	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
	일반	유니트케어	일반	유니트케어
1	93,070	97,020	74,590	87,770
2	86,340	90,010	69,210	81,440
3	81,540	84,990	63,800	75,070

※ 1인실 운영에 따른 상급침실로 비급여비용 책정은 해당 기관 운영에 따름

- (프로그램지원비) 외부활동 프로그램 월 2회 이상 운영 시 지급
  - 유니트당 월 40만원 지원하며, 맞춤형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
  - 외부 활동 프로그램은 시설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의미
  - 지원비 지급을 위한 활동 근거자료 별도 제출
- (인센티브)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월 135만원\* 지급
  - 전임 근무 요양보호사 1인당 월 10만원 정액 지급 포함



## 10. 유니트케어 2차 시범사업 ... 기관관리부 2팀

---

### ◆ 향후 계획

- 유니트케어 3차 시범사업 추진('26.7.1.~'27.6.30. 예정)
  -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및 기관 대상 설명회 실시('26.3~5월)
  - 3차 시범사업 공고 ... 보건복지부, 공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('26.3~4월)
  -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접수, 현장 점검 및 선정위원회 개최('26.5~6월)
  - 3차 시범사업 참여 선정기관 유니트케어 급여 개시('26.7.1.~)

1 1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



## 11.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… 기관관리부 5팀

### ◆ 추진목적

-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·간호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게 간호 등 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 
요양·건강관리 통합 제공 체계 마련

### ◆ 사업개요

- (사업대상) 정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90개소 확대 운영 예정
  - (기존) '25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기관 중 '26년 연장 선정기관 48개소
  - (신규) '26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42개소
- (사업내용) 계약의사 진찰에 따라 간호관리 및 교육·상담 등 수급자 상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

## 11.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... 기관관리부 5팀

### ◆ 주요내용

- (입실정원) 기관 당 수급자 27~32명 이하 또는 33~38명 이하
- (운영단위) '유닛(한 층/동의 연속된 공간)'을 기본단위로 지정하여 운영
- (이용대상) 참여기관 입소자 1~4등급자 중 입실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
- (인력배치) 전문요양실 수급자 6명당 간호인력(간호사, 간호조무사) 1명 배치

※ 간호사는 60% 이상 의무배치, 간호인력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

- 전담 간호인력 전문요양실 근무 이전 교육 이수 필수

구분	교육이수 자격	직무교육
간호사	최근 10년 이내 간호사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 간호대학 졸업자	총 52시간(이론20, 실습8, 현장실습24)
간호조무사	최근 10년 이내 간호보조업무경력 1년 이상	총 18시간(이론10, 현장실습8)

- (계약의사) 전문요양실 전담 1명 지정(한의사, 치과의사 제외), 주1회 진찰



## 11.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... 기관관리부 5팀

### ◆ 주요내용

- (급여비용) 전문요양실 등급별 1일당 수가 + 계약의사 활동비용 + 인센티브

- (전문요양실 수가) 영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이원화하여 산정

(26년 수가반영, 단위: 원)

등급	기준 수가(2.1:1)		한시적 수가(2.3:1)	
	일반	전문요양실	일반	전문요양실
1	93,070	109,780	88,520	104,410
2	86,340	101,950	82,120	96,960
3, 4	81,540	96,050	77,540	91,340

- (계약의사 활동비용) 주 1회 수급자 방문진찰에 따른 비용 산정

※ (진찰비용) 1인당 초진비용(18,840원) 또는 재진비용(13,370원) / (방문비용) 53,000원 산정

- (인센티브) 간호인력, 영양보호사, 계약의사, 참여기관에 지급

구분	계	간호인력	영양보호사	참여기관
현원 27명 이상 ~ 32명 이하	1,050,000	500,000	400,000	150,000
현원 33명 이상 ~ 38명 이하	1,250,000	600,000	500,000	150,000

※ 이 외, 간호사 1인당 월 20만원, 욕창(당뇨발)드레싱·치료재료 월 3만원, 계약의사 재진진찰료의 20% 지급 및 현장실습 제공에 따른 교육수당 인센티브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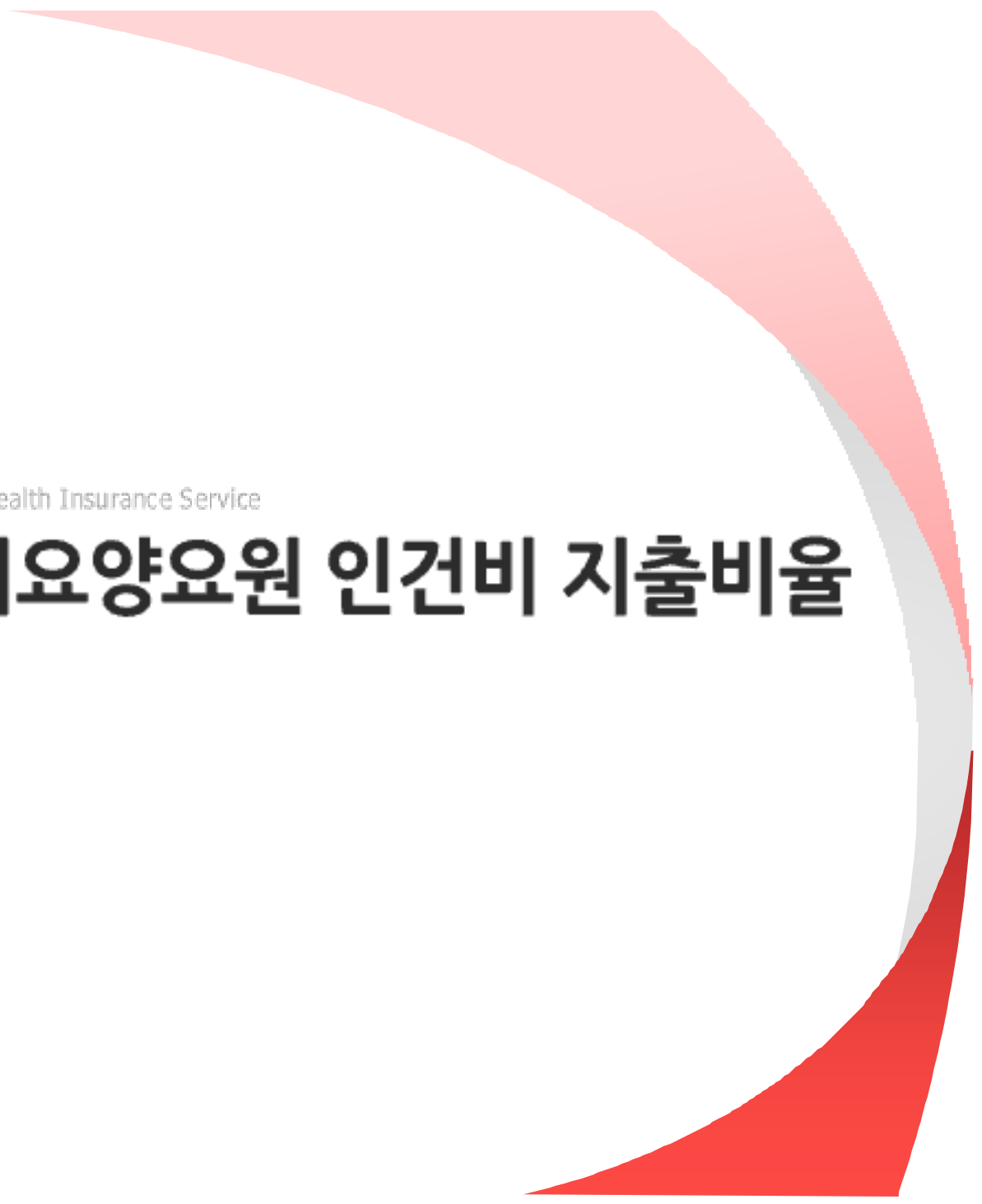


## 11.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... 기관관리부 5팀

---

### ◆ 향후 계획

- 2026년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(4월 중)
  - (공모) 3.16.~4.3. ..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
  - (선정) 신규 참여기관 42개소 예정 ... 상반기 미달 시 하반기 추가 선정 계획
-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요양실 참여기관 현장지원(~12월)



1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



## 12.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… 종사자관리부 4팀

### ◆ 추진목적

-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한 처우개선 도모

### ◆ 개요

- (근거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8조 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 제6항, 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조 (예산의 편성 및 제출) 등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지출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함
- (대상) 전체 장기요양기관
- (방법)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 공단 제출(매월 전자문서교환방식)

### ◆ 주요내용

- (인건비)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,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(시간외수당, 야간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), 장기근속장려금, 사회보험기관부담금, 퇴직적립금 등
  - \* 기타수당: 명절수당, 가족수당, 성과상여금, 정액급식비, 교통비(고시 제 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하고, 교통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사는 수급자의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)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
- (인건비지출내역 신고)
  - 장기요양기관이 기관포털 전산화면에서 급여유형별로 '인건비'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직종별 합산하여 입력



## 12.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... 종사자관리부 4팀

### ◆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및 인건비 지출비율

구분	장기요양요원	인건비 지출비율
노인요양시설	간호(조무)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	62.6%
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	간호(조무)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*, 요양보호사 *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	65.2%
주야간보호	간호(조무)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	48.6%
단기보호	간호(조무)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	58.9%
방문요양	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* * 사회복지사, 가산을 받는 간호(조무)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포함 가산인정 인원수 만큼 인정	87.0%
방문목욕	요양보호사	49.7%
방문간호	간호(조무)사, 치과위생사	60.2%

※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**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제출**

-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
  - 조리원, 영양사, 위생원의 장기근속장려금, 주야간보호 조리원 배치 가산금
  - 각종 한시적 지원금(검체 채취 지원금, 감염예방수당, 특장차량지원금 등)



1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**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**



### 13.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 ... 종사자관리부 4팀

#### ◆ 안내사항

-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및 수급자(보호자)·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을 위한 「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」, 「상호협력동의서」 적극 활용
-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리,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「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」 적극 활용

제목	주요내용	게시위치
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권침해유형</li> <li>·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</li> <li>·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</li> <li>· 장기요양요원보호 관련 법령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홈페이지 → 알림·자료실 → 알림방 → 공지사항 (제목 검색: "인권")</li> <li>· 장기요양기관 포털 → 기타 → 게시판 공지사항 (게시글 검색: "인권")</li> </ul>
상호협력동의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기요양요원 및 수급자의 상호 인권 존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홈페이지 → 알림·자료실 → 알림방 → 공지사항 (제목 검색: "표준근로계약서")</li> </ul>
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권리,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기요양기관 포털 → 기타 → 게시판 공지사항 (게시글 검색: "표준근로계약서")</li> </ul>



### 13. 종사자 권익 및 인권보호 ... 종사자관리부 4팀

---

#### ◆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안내(대표자, 시설장 상담 제외)

##### ● (1차)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화(상시운영)

- (상담내용) 업무고충 상담, 성희롱 상담, 노동상담 등
- (전화번호) 033-811-2282

##### ● (2차) 공인노무사 전문상담

- (운영기간) 2026.1.21. ~ 12. 23.
- (상담내용) 임금체불, 부당해고, 산재, 직장내 성희롱, 인사노무 고충 등
- (운영방법)
  - (유선) ☎ 010-2753-2338 ... 매주 수요일(10:00~12:00)
  - (이메일) [cplaforyou@naver.com](mailto:cplaforyou@naver.com) ... 상시운영
  - (오픈채팅) 카카오톡-오픈채팅-검색-'민노무사' 검색 후 1:1채팅 ... 상시운영



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**선임요양보호사 제도 확대**



## 14.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확대... 종사자관리부 3팀

### ◆ 추진목적

-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력자 처우·역할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 직무 숙련도 편차 해소 및 장기근속 장려

### ◆ 관련근거
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」 제11조의6(선임요양보호사), 제11조의7(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)

### ◆ 주요내용

#### ● 제도확대

(기존)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→ (확대)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\*  
(확대)35인 이상 주·야간보호기관\*

\*고시 개정('26.1.1) 시행('26.7.1.) ... 선임요양보호사 배치 대상기관 확대

#### ● 선임요양보호사

요양보호사로서 직접 서비스 제공과 선임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보호사 등에 지도 및 지원역할 수행

- (역할) 서비스 제공 + ❶기술 지도 ❷기록·확인 점검 ❸갈등·중재 고충상담
- (처우개선) 선임요양보호사 배치·운영 시 수당(월 15만원) 지급



## 14.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확대... 종사자관리부 3팀

### ◆ 추진일정

#### ● 교육실시

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대상 총 40시간(온라인 24h⊕집합16h) 승급교육 실시

- (시설) 3~5월 / (주·야간) 6월 ... 교육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운영 예정

- (대상) ①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②이용자 35인 이상인 주·야간보호기관에  
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

※ ① 노인요양시설: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(월120시간 이상) 이상 근무한 자

② 주·야간보호기관: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(월 120시간 이상) 근무한 자

5~6월 교육 일정				
급여종류	공고일정	신청일정	집합교육일정	교육장
시설	3.16.	3.31.~4.2.	5.7.~5.29.	인천,광주,부산,서울, 고양,의왕
주·야간	4.13.	4.20.~4.23.	6.4~6.26.	대구,수원,광주,서울, 부산,청주,제주

※ 일정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.



15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

## 15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… 종사자관리부 2팀

### ◆ 추진목적

-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,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

### ◆ 관련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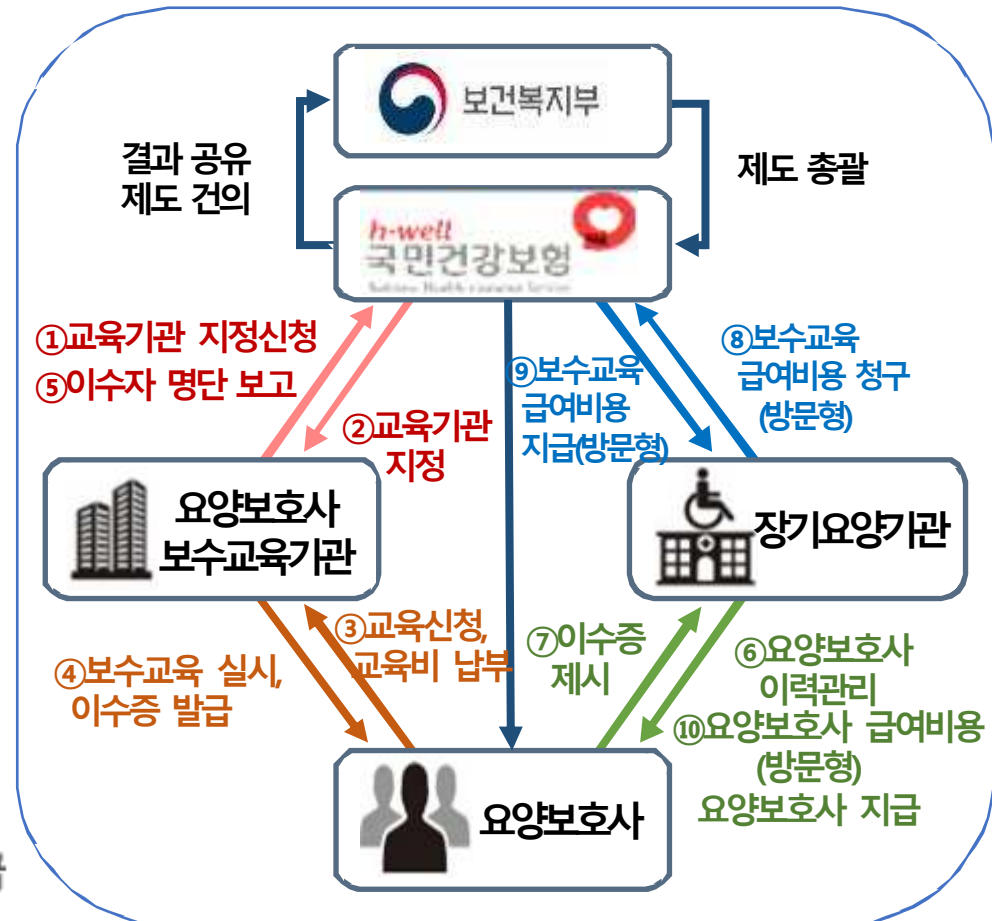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(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(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(보수교육의 실시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(요양보호사 보수교육)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



# 15. 영양보호사 보수교육 ... 종사자관리부 2팀

## ◆ 운영 체계도

- ① 교육기관 지정신청
- ② 교육기관 지정
- ③ 교육신청, 교육비 납부
- ④ 보수교육 실시, 이수증 발급
- ⑤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보고
- ⑥ 소속기관 영양보호사 이력관리
- ⑦ 이수증 제시
- ⑧ 보수교육 급여비용(방문형) 청구
- ⑨ 보수교육 급여비용(방문형) 지급
- ⑩ 보수교육 급여비용(방문형) 영양보호사 지급





## 15.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… 종사자관리부 2팀

### ◆ 보수교육 개요

- 보수교육 시작일: 2026.1.1. ~ 계속
- 대상: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(출생 연도 기준 매2년에 1회, 2026년은 짝수연도생)
- 교육 주기: 매 2년 마다 8시간 이상 교육
- 교육시간 및 방법: 대면(8h) 또는 온라인(4h) ⊕ 대면(4h)  
\* 온라인 ⊕ 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(4시간) 먼저 수강 권고
- 교육과정: 4개 필수 영역 (★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 이수해야 인정)
  - ① 요양보호와 인권, ② 노화와 건강증진, ③ 요양보호와 생활지원, ④ 상황별 요양보호기술
  - ①② 영역만 온라인 교육 가능, ③④영역은 반드시 대면교육
- 교육비용: 대면(8h) 36,000원 / 온라인(4h)(12,000원) ⊕ 대면(4h)(18,000원)

👉 교육기관 찾기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> 민원서비스 > 검색서비스 > [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](#)

- (대면교육기관) 교육제공방법에서 '대면' 클릭, 지역은 '시·군·구'로 검색
- (온라인교육기관) 교육제공방법에서 '온라인' 클릭, 지역은 '전체'로 검색

👉 요양보호사 직접 보수교육실시기관에 신청. 필요 시 장기요양기관의 장 단체신청 가능



16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



## 16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 … 급여이용기반부 1팀

### ◆ 추진배경

-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, 재가급여 대부분은 1~2종\*의 급여만 제공
  - 수급자는 단일급여 이용에 익숙하고, 특히 가사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
- \* 재가수급자 79.6%는 1종 급여만 이용, 그 중 59.0%가 방문요양 이용('24.12.기준)

### ◆ 목적

-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·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재가서비스 본 사업 실시('25.3월~)
  -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조정을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필요

### ◆ 추진경과

-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등 검증을 위해 '16.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
- '21.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 단계로 예비사업II 추진(~'25.2.28.)
-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등 개정
  - 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제3·4항 신설('24.1.2.개정, '25.1.3.시행)
  -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(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, 시설 및 운영기준 등) 신설('25.2.28.시행)
-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실시('25.3월~) : 총 233개소('26.1.8.기준) … 가정방문형 134개소, 주야간보호형 99개소
-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로 전환('26.2.11.~)



## 16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 ... 급여이용기반부 1팀

### ◆ 사업내용

#### ● 통합재가서비스란?

- 하나의 기관(주·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)에서 수급자의 욕구·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(주·야간보호, 방문간호, 방문요양, 목욕)를 전문인력(간호사·간호조무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)이 복합적으로 제공





## 16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 … 급여이용기반부 1팀

### ◆ 사업내용

#### ● 통합재가서비스 주요내용

- (사업대상) 장기요양 1~5등급 수급자 중 이용 희망자
  - ※ (제외)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 제공받는 자, 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등
- (제공기관) 하나의 기관기호로 ①방문간호⊕방문요양, ②주·야간보호⊕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, 시설·인력기준등을 충족하여 '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공모'를 통해 선정된 기관
- (서비스 내용)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·상태를 반영하여,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
  - ① 가정방문형: 방문간호, 방문요양,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
  - ② 주·야간보호형: 주·야간보호(건강관리), 방문요양,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
- (급여비용)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또는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지급
  - ① 가정방문형: 수급자에 대해 월 한도액 110%까지 추가 산정
    - 방문간호 월2회 이상, 방문요양 월4회 이상, 등급별 월 한도액의 80%이상 제공
  - ② 주·야간보호형: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    - 주·야간보호(건강관리) 월1회 이상, 방문요양 월1회 이상, 등급별 월 한도액의 80%이상 제공

17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·통보·관리



## 17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... 급여이용기반부 2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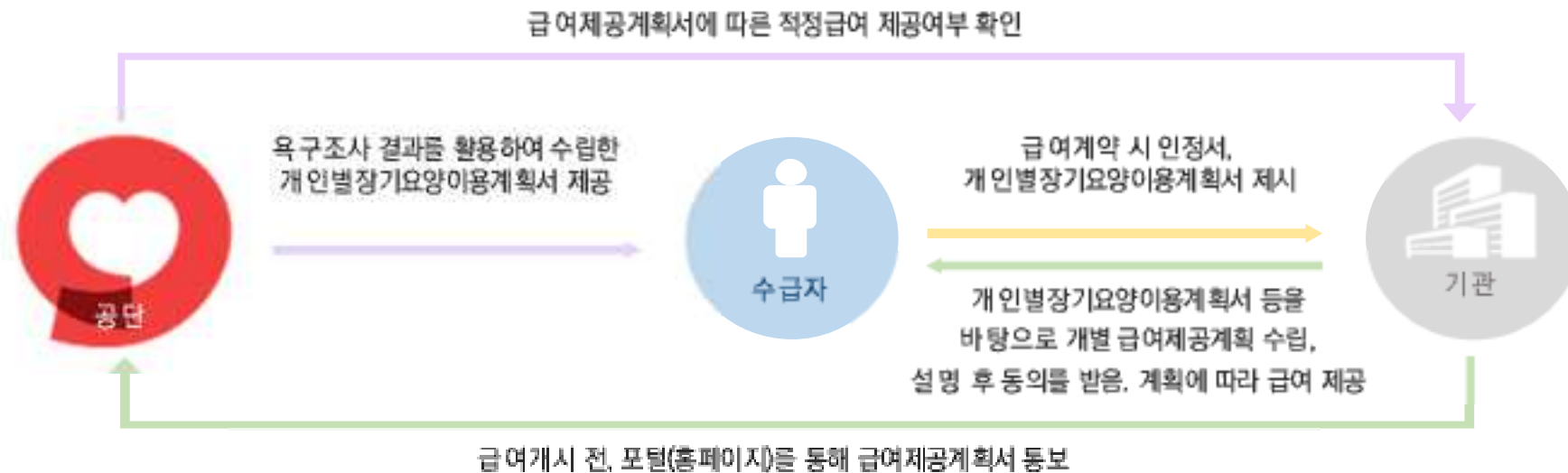
### ◆ 목적

-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제공계획 수립·통보·관리를 통한 수급자별 맞춤형 급여이용 지원
  - ※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등에 따라 “급여제공시작 전에” 제공계획을 수립,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공단에 통보해야 함

### ◆ 급여제공계획 업무 흐름도

#### ● 주요내용

- (대상)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 제외)
- (전산경로)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기관서비스/급여계약통보서/급여제공계획서
  - ※ 참고자료: 급여계약통보서 > 게시판 > 자료실 > [공지]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 게시





# 17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... 급여이용기반부 2팀

## ◆ 급여제공계획서 작성내용

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(출력용)

급여제공계획서 번호 :

수급자 성명	생년월일	장기요양기관명	장기요양기관번호
장기요양 등급	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	장기요양기관번호	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번호

장기요양 급여종류	장기요양 급여계약일	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	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	작성일
			급여제공계획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	작성한 날짜

목적: **서비스를 제공하여 얻고자 하는 종합효과(장기적, 포괄적)**

세부제공내용의 소요 시간  
\* 1일 다 횟수 서비스의 경우 1회당 소요 시간 기재

급여종류	장기요양 필요영역	장기요양 세부목표	장기요양 필요내용	세부제공 내용	횟수 (주기/회)	시간 (분)	작성자
	급여제공에 필요한 영역 ex) 신체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	세부제공내용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 (단기적, 구체적) ▶수급자를 중심으로	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	수급자가 제공받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			

종합의견	- 수급자의 주된 욕구 및 서비스 요구사항 등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다르게 작성된 사유(급여종류, 필요내용 등) -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할 점	총괄확인자	급여제공계획서의 총괄 관리자 (모니터링 역할 수행자)	(서명 또는 인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위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  
전화번호 : 동의자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(수급자와의 관계) (서명 또는 인)  
듣고 동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

작성내용 설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작성한 급여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기간</li> <li>적용기간은 해당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이내에 속해야 하며, 계약 시작일자와 종료일자 기간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음. 급여제공계획 적용 시작일자가 작성일자 또는 최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출력일자보다 빠른 경우 등록 불가.</li> <li>적용기간 시작일자 :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보다 이전 날짜로 입력 불가 (급여개시 전 작성·통보)</li> <li>적용기간 종료일자 : 급여제공계획서 시작일로부터 다음 외제연도까지 작성 가능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작성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 날짜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를 제공하여 얻고자 하는 종합효과(장기적, 포괄적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기요양 필요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급여제공에 필요한 영역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체활동지원</td> <td rowspan="3">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</td> </tr> <tr> <td>인지활동지원</td> </tr> <tr> <td>인간관계지원</td> </tr> <tr> <td>정서지원</td> <td>방문요양</td> </tr> <tr> <td>일상생활지원(환경관리)</td> <td>방문요양</td> </tr> <tr> <td>인지활동지원(인지관리)</td> <td>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</td> </tr> <tr> <td>일상생활지원(인지지원)</td> <td>* 인지지원등급에만 도달되는 장기요양 필요영역</td> </tr> <tr> <td>개인활동지원</td> <td>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</td> </tr> <tr> <td>지역자원연계</td> <td>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</td> </tr> <tr> <td>전문목욕</td> <td>방문목욕</td> </tr> <tr> <td>건강관리</td> <td>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</td> </tr> <tr> <td>간호처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능회복훈련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응급지원</td> <td>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</td> </tr> <tr> <td>생활 및 환경지원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신체활동지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인지활동지원	인간관계지원	정서지원	방문요양	일상생활지원(환경관리)	방문요양	인지활동지원(인지관리)	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일상생활지원(인지지원)	* 인지지원등급에만 도달되는 장기요양 필요영역	개인활동지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지역자원연계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전문목욕	방문목욕	건강관리	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간호처치		기능회복훈련		응급지원	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생활 및 환경지원	
신체활동지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지활동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간관계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서지원	방문요양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상생활지원(환경관리)	방문요양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지활동지원(인지관리)	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상생활지원(인지지원)	* 인지지원등급에만 도달되는 장기요양 필요영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인활동지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역자원연계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목욕	방문목욕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강관리	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간호처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능회복훈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응급지원	주야간보호,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, 단기보호,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활 및 환경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부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기요양급여(세부제공내용)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단기적·구체적 목표 설정</li> <li>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자가 얻을 수 있는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(수급자 중심 목표설정)</li> <li>ex) 욕실금 실수 예방을 위해 도움을 준다(공급자, 제공자 중심으로 작성되어 부적합) - 배뇨도움을 받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(수급자 중심으로 작성되어 적정)</li> <li>수급자의 개별 욕구 및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수립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필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으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됨 ... 수급자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여 기본 제시된 항목 외 추가로 작성 가능</li> <li>수급자의 기능상태·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 작성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부제공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필요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 (필요내용에 따라 자동연계)</li> <li>(필요내용) 온 입고 뒷정리하기 - (세부제공내용) 온 추스르기 등 뒷정리 도움</li> <li>수급자의 기능상태·욕구 및 필요내용에 적합한 세부제공내용 작성</li> <li>수급자 기능상태·욕구 반영한 실제 제공서비스 내용에 맞춘 세부제공내용 주기 작성 가능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거 횟수 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제공 내용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기재</li> <li>서비스의 내용별 제공 주기(일, 주, 월, 필요시)를 선택하여 작성</li> <li>* 1일 다 횟수 서비스의 경우 1회당 소요 시간 기재</li> <li>일 단위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으로,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적절한 주기를 선택하여 작성</li> <li>고시 상 기준에 따른 급여종류별 적정 제공시간 작성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급자의 주된 욕구·기능상태 기재</li> <li>수급자의 상태 상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향과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작성</li> <li>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사유에 대한 기재</li> <li>그 외 급여제공에 관한 전반적, 종합적인 사항 기재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괄확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급여제공계획서의 총괄 관리자(모니터링 역할 수행자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급여제공계획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## 17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... 급여이용기반부 2팀

### ◆ 주요내용

-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(지체없이 재작성-설명·동의-통보)
    - 수립한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 종료 예정으로, 지속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
    -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(갱신, 등급변경,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)
    -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또는 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확인한 경우
    - 공단과의 사례회의 결과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   - 급여제공모니터링(급여제공결과평가) 결과 제공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...30일 이내 평가준
    - 욕구사정 결과 반영을 위해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   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되고 수급자의 기능상태, 욕구 등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※ 단, 기능상태, 욕구, 서비스 내용 변경 이외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단순 재발급은 재작성 하지 않음



## 17.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계획 작성·통보·관리 … 급여이용기반부 2팀

### ◆ 유의사항

- **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권고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작성 및 통보불가**
  - ※ 단, 단기보호 급여종류 권고없이도 작성가능  
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만 권고되어도 방문요양(장기요양가족휴가제) 작성가능
- 급여제공계획서에 작성하려고 하는 급여종류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맞지 않는 경우, 수급자 욕구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·발급받은 이후 출력일자 등록 가능

### ◆ 급여제공 모니터링(급여제공결과평가) 실시

-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의 적정성과 목표달성 여부, 기능상태와 욕구변화 등을 확인(평가)하기 위해 실시
- 급여제공 모니터링 결과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필요시 재작성
-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 자체서식 활용 가능
  - ※ 화면경로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기관서비스/급여계약통보서/급여제공모니터링  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/기관서비스(종사자로그인)/급여제공관리/급여제공결과평가  
…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만 사용가능



1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 
모의전산 운영



## 18.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모의전산 운영 ... 급여이용기반부 4팀

### ◆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이란?

-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 급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기요양정보시스템(기관포털) 내 급여 제공 과정을 기록·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운영 체계

### ◆ 추진 배경 및 목적

#### ● 배경

- 그동안 급여기록을 서면(또는 민간 프로그램)으로 작성하고, 청구자료만 다시공단 전산에 입력하는 비효율적 구조 지속
- 수급자 중심의 적정 급여제공 필요성이 지속 증가

#### ●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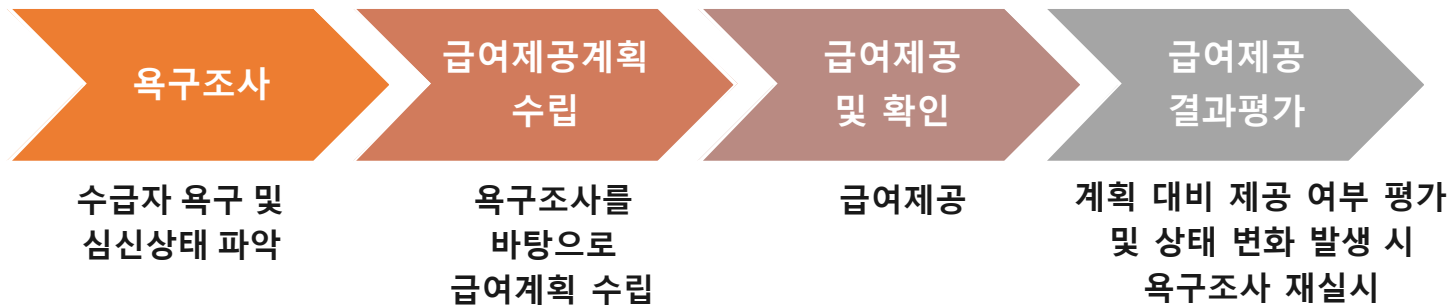
- 급여기록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
- 적정 급여제공 체계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
- 종이 기록물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기록물 관리 관련한 행정 부담 완화



## 18.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모의전산 운영 ... 급여이용기반부 4팀

### ◆ 주요 내용

- (대상) 입소형 장기요양기관
- (내용) 급여제공기록, 재활기록, 간호기록, 운영기록 등 급여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에 기록
- 급여제공관리 흐름



### ◆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

시기	내용
'26.4월	·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 대상 모의 운영
'26. 하반기	·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상 모의 운영
'26.12월 ~	· 전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산 운영 확대 예정

19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청구우수기관을  
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



## 19.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 ... 심사관리부 2팀

### ◆ 추진목적

-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우수기관에 대해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하여, 타기관의 롤 모델화를 통한 적정 청구 문화 조성

### ◆ 주요내용

#### ● (선정 및 운영)

- 대상: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우수기관 460개소 ... 작년 대비 40개소 확대 운영
- 운영기간: 2026.4.~2027.3. (매년 연 단위 선정)
- 기준: 청구 역량을 갖추면서도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  
  > 급여비용 적정청구, 환수내역 등 5개 기준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기준 배점 합 상위기관 선정

#### ● (역할 및 인센티브)

- 청구그린기관 증서 수여, 언론보도 등 대국민 홍보
- 민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현황 및 홈페이지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

#### ● (기타)

- 선정기간 중 행정처분 확정된 기관은 그린기관 선정 취소
- 취소 시 민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현황 및 홈페이지 청구그린기관 표기 제외 등



20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청구상담전문가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



## 20. 청구상담전문가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 … 심사관리부 2팀

### ◆ 추진목적

- '청구업무 우수자'를 청구상담전문가로 위촉하여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지역밀착형 상담 제공
- 청구업무 지식의 선순환 및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

### ◆ 주요내용

- (위촉 기준)
  -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
  - 청구 경력 60개월 이상(전체 장기요양기관 근무 월 수)인 경우
  -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력 및 건강보험 체납이 없는 경우
- (위촉 방법)
  - (운영센터) 장기요양기관에 문서 시행, 청구상담전문가 신청 접수 및 추천
  - (지역본부) 선발 위원회 운영, 청구상담전문가 선발 및 관리, 간담회 주관
- (역할 및 인센티브)
  - 청구 관련 문의 시 상담 및 상담내용 전산 등록, 정보공유 등
  - 격려물품 지원, 나눔 자료 매월 제공, 상담활동 기여도 따른 상품권 제공, 우수 청구상담전문가포상
- (청구상담전문가 조회)
  - 급여비용청구 > 청구상담전문가 > 청구상담전문가 조회 > 급여종류 선택 > 지역 선택 > 조회
  - 상담 요청 시 상담요청기관의 명칭, 상담 요청자 성명과 직종 밝힌 후 상담 가능

21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**‘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’  
관련 상시 학습 콘텐츠 확대**

## 21. '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' 관련 상시 학습 콘텐츠 확대 ... 요양수가부 2팀



### ◆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이해」 상시 학습 콘텐츠 운영

- (목적)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현장 운영 지원 및 올바른 청구 문화 조성
- (대상)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청구담당 종사자 등

### ◆ 주요내용

구분	주요 내용
동영상 교육 (‘26년 개정사항 중점)	(기본편) 고시·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별 상세 설명 (심화편) 고시·세부사항 사례별 다빈도 Q&A 위주의 안내
이러닝 교육 (고시·세부사항 전문 해설 중점)	(교육명)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 (구성) 1~8차시 재가·시설급여 제공기준, 9~16차시가산·감액 산정기준
현장 사례별 다빈도 질의·답변 안내(분기별)	현장에서 착오 적용하기 쉽거나 해석이 어려운 사례별 Q&A 안내

### ◆ 학습자료 게시 위치

- 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 알림·자료실 > 알림방 > 공지사항



22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



## 22.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 … 요양조사부 2팀

### ◆ 추진목적

-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재정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
-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로 공익신고 활성화

### ◆ 주요내용

- 신고 대상
  -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불법·부당행위 일체
- 신고인 유형별 포상금

신고인 유형		최대 포상금
장기요양기관 관련자	피신고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	2억 원
장기요양기관 이용자	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	500만 원
그 밖의 신고인	'장기요양기관 관련자, 장기요양기관 이용자'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	



## 22.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 … 요양조사부 2팀

### ● 신고 방법

- 온라인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모바일 앱(건강보험 25시)

구분	세부경로
인터넷 (노인장기요양보험)	<b>민원상담실</b> → 포상금제도안내 →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 안내 → 신고하기(실명/익명 선택)
모바일 앱 (건강보험 25시)	<b>메뉴</b> → 국민소통 · 참여 → 신고센터 →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→ 신고 → 신고하기(실명/익명 선택)

※ 익명신고는 인터넷 ·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며, 포상금 지급하지 않음

※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·가담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

- 서면: 내방·우편, 공단 지사(운영센터)·지역본부 접수

※ 부득이한 경우,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



## 22.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·포상금 제도 … 요양조사부 2팀

### ◆ 주요 부당청구 사례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일체
  - (요양시설) 장기요양 2등급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을 하였으나, 외박 수가로 청구하지 않고 1일당 수가로 급여비용 거짓 청구
  - (주·야간보호)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여 24시간 보호하였으나, 주·야간보호 급여비용으로 청구(산정기준 위반)
  - (공통)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이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, 사무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신고된 직종으로 거짓 청구
  - (공통)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4회 또는 월 16회 이상,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거짓 청구
  - (공통)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 등록하고 거짓 청구



2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
2026년 신규기관  
운영컨설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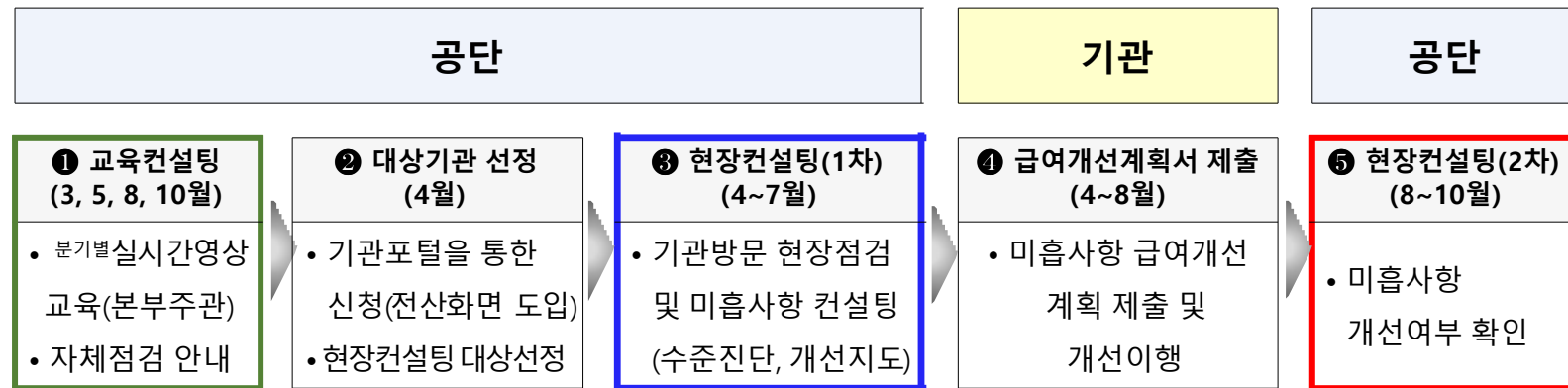


## 23. 2026년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... 요양평가부 4팀

### ◆ 추진목적

- 신규개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기준에 대한 사전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도모
  - (배경) 신규기관 개설시점에 따라 최장 4년차에 처음 평가를 받아 서비스 질 사각지대 발생 우려

### 〈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운영 흐름도 〉



### ◆ 운영방법

- (교육컨설팅) 네이버밴드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(분기별) 및 실시간 교육(연2회, 평가 Q&A 등)
- (현장컨설팅) 1차 현장컨설팅 → 급여개선계획 제출 및 개선 → 2차 현장 컨설팅(1차 80점 미만)
  - ① (1차 컨설팅) 현장점검
  - ② (급여개선계획) 1차 현장컨설팅 결과 급여개선계획 등록 및 미흡사항 보완, 자체 개선 독려
  - ③ (2차 컨설팅) 1차 현장컨설팅 점수 80점 미만 기관 대상 2차 현장 컨설팅 실시

# 참고자료 1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# 노인학대 정의 및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



# [참고자료 1] 노인학대 정의 및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강령 ... 기관관리부 4팀

## ◆ 노인학대 ..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제4호

-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 ◆ 노인학대의 유형 ..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, 제 36조의 9 규정 바탕

**신체적 학대**


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**정서적 학대**


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**성적 학대**



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**경제적 학대**



노인의 의사에 반(또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
**방임**



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양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필요한 생활비,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
**자기방임**


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

**유기**

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

◆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

-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,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.
-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.
-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.
-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.
-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건강상태,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노인의 면회나 외출,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.
-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
## 참고자료 2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노인복지시설 입소자(무연고자) 금품관리 안내



## [참고자료 2] 노인복지시설 입소자(무연고자) 금품관리 안내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장기요양기관 안내사항 ...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관련

#### ●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처리(노인복지법 제28조 및 제48조)

- 복지실시기관\*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생활노인이 사망 시 사망자의 유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 필요비용으로 충당 가능

\* 복지실시기관: 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참조)

- 직계 혈족 등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「민법」에 따라 처리, 다만,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\*할 수 있다(노인복지법 제48조)

\* '21.6.30 이후 노인주건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

- 사망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유류금품 신속처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(02-3476-4000(내선10번)) 법률지원단 운영



◆ 장기요양기관 안내사항 ...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관련

-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(노인복지시설) 참고
  - ※ 「2026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」(II), 7-5.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III. 시설 안전관리지침 3.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참고
-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통장 등 입소자 금품관리
  -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, 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” 를 참고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관리
  - 입소자가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통장 등 개인금품을 시설에서 관리하지 않도록 할 것

# 참고자료 3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# 음 예방 및 관리 관련 안내



## [참고자료 3] 옴 예방 및 관리 관련 안내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옴 예방 및 관리방법 등

#### ● 예방 및 위생처리 (개인위생, 보건교육, 집단위생 등 환경개선)

-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시설내 접촉자는 동시에 치료 실시 필요
- 실내 진공청소기 청소(천이 씌워진 가구 포함)
- 속옷, 침구 등 50~60도 물로 10~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말 것
- 세탁이 어려운 것: 2일간 햇볕에 말리거나 다리미로 다리기, 세탁 불가 의류: 3일 이상 보관 후 재사용

#### ● 관리 방법

- 환자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실시
- 환자 접촉, 분비물 및 의료물품이나 병실 환경 접촉 시 손위생
- 접촉 또는 케어행위 시 장갑, 마스크, 가운 등 착용
- 정기적으로 오염 확인 시 청소와 소독

#### ● 참고자료

-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권 감염병 예방 및 관리(국민건강보험공단)
-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(2권) 7-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'옴 관리수칙'
- 2024년도 옴 예방 관리 안내서(질병관리청)

## 참고자료4
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# 장기요양기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안내



## [참고자료 4] 장기요양기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안내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장기요양기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... 노인복지법 시행규칙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

#### 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(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)

1.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: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
2.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: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
3.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:  
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

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	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
<p>[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]</p> <p>4. 설비기준  사. 그 밖의 시설  (2)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,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<b>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,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,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b>  (5)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<b>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,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.</b></p>	<p>[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]</p> <p>2. 시설 및 설비 기준  나.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 3) 설비기준  바) 그 밖의 설비  (2)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<b>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,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,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b>  (5)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<b>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,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b></p>



## [참고자료 4] 장기요양기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안내 ... 기관관리부 4팀

### ◆ 장기요양기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

#### ●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3) : 1차위반 경고~4차 위반 지정취소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2,4 : 1차 위반경고~ 4차 위반 사업폐지

#### ● 장기요양기관 정기안전점검(지자체 수행)

- 하절기·동절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안전점검 시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확인 예정  
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작동이 미흡한 경우 **조속한 조치 요망**


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